

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·복사 제한신청 안내

- ※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,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당사자 외 제3자가 판결서의 열람·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·복사 제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의2 제4항, 제163조).
- ※ 열람·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후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(다만,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 후 공개됩니다).

1. 신청자격: 민사·행정·특허 등 본안사건의 관계인

당사자, 법정대리인, 특별대리인,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, 참가인, 소송수행자, 소송대리인, 지배인, 선정자, 증인,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아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

2. 신청대상 판결서

민사·특허·행정 사건 등 「민사소송법」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의 판결서(다만, 2014. 12. 31.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,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「민사소송법」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)

3. 신청사유

-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,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
-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

를」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)이 적혀 있는 때

4. 신청방법

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[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서] 접수(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)